

소독기준(제11조제2항 관련)

1. 가스소독기준

약 제 명	투약량	소독시간	소독대상
시안화수소(HCN)	2g/m ³ 이상	2시간 이상	쥐, 벌레
메틸브로마이드(CH ₃ Br)	48g/m ³ 이상	24시간 이상	벌레
설파릴 플루라이드(SO ₂ F ₂)	48g/m ³ 이상	24시간 이상	벌레

※ 벌레잡기 소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, 벌레가 다량으로 발견되는 등 보건위생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가스소독을 한다.

2. 그 밖의 소독 기준 및 방법

제1호의 가스소독을 제외한 살충 및 살균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6에 따른다.

3. 수출화물의 소독기준

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출화물의 소독은 수입국의 소독기준에 따른다.